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7 선고 2018가단1081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변론 종결2021. 9. 8.

판결 선고2021. 10. 27.

주 문

1. E 주식회사와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13,452,0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6,726,037원 및 그 중 각 52,161,05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1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8. 7. 6. 현재 E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의 원금은 104,322,101원이고, 원리금 합계는 113,452,074원이다.

나. E는 2017.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망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8. 11.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2020. 11. 1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4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1. 3. 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113,452,074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여부 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0, 11, 12, 13, 14, 15호증, 을 제5,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1,728,290,2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31,921,440원 + 아산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의 시가 1,196,368,760원)

② E 명의 화물용 자동차 15대: 947,700,000원¹⁾ [2017. 8. 8. 당시 E 명의 화물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되는 19대 중 4대²⁾는 지입차량으로 아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8. 당시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입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입차량의 경우 사업주인 E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보기 어렵고,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③ 적극재산 총액: 2,675,990,000원(이 사건 각 부동산 등 가액 1,728,290,000원 + 화물용 자동차 가액 947,700,000원)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적극재산 외에도 E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용 자동차 20대의 영업용 번호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E의 대표이사 G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화물용 자동차들과 배우자인 망인 명의의 화물용 자동차는 E로부터 명의신탁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로 그 명의를 이전된 차량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보유하던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C 및 망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E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E의 자력으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금융내역 등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E는 2017. 8. 8. 당시 H은행에 대하여 1,027,000,000원, I에 대하여 50,000,000원, J카드에 대하여 28,000,000원, K카드에 대하여 8,000,000원, L에 대하여 141,000,000원, M에 대하여 118,000,000원, N에 대하여 22,000,000원, O에 대하여 133,000,000원, P에 대하여 152,000,000원, Q에 대하여 129,000,000원, A에 대하여 110,000,000원, R은행에 대하여 85,000,000원, S조합에 대하여 840,0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총액은 2,843,000,000원(= 1,027,000,000원 + 50,000,000원 + 28,000,000원 + 8,000,000원 + 141,000,000원 + 118,000,000원 + 22,000,000원 + 133,000,000원 + 152,000,000원 + 129,000,000원 + 110,000,000원 + 85,000,000원 + 840,000,000원)이다.

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의 합계는

2,675,99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는 2,843,000,000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E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된 화물용 자동차 중 일부에는 단독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였던 E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E가 E의 H은행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정당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가 H은행에 대한 채무 37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H은행에 대해 변제한 채무액 370,000,000원을 초과하는 530,000,000원인 점, ② E는 H은행에 채무를 변제한 이후 회사 영업을 통해 채무 변제 자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모두 매각하여 버렸으며, 결국 이듬해 폐업처리 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E의 H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는 그를 통해 회사를 되살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보기 힘든 점, ③ E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채무 변제 후 남은 금액들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거나 공동담보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G에게 차용금 및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E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했고, E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과 G이 2017. 8. 29.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G의 배우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23.까지 E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E의 재정상황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E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는 이례적이며 망인은 E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41,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H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망인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8. 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31,921,44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37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 531,921,44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에서 H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161,921,440원(= 531,921,440원 - 37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13,452,074원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상당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13,452,0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망인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3,452,07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대출금 원금인 104,322,101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이 사건이 계속 중인 2020. 8. 11. 망인이 사망하였고, 2020. 11. 11.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가액배상채무는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6,726,037원(= 가액배상채무액 113,452,074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각 52,161,050원(=대출금 원금 104,322,101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재남

별지

1)able>순번차량번호가액(원)비고1(차량번호 1 생략)35,000,0002(차량번호 2 생략)35,000,0003(차량번호 3 생략)50,000,0004(차량번호 4 생략)49,000,0005(차량번호 5 생략)105,000,0006(차량번호 6 생략)125,000,0007(차량번호 7 생략)95,000,0008(차량번호 8 생략)12,500,0009(차량번호 9 생략)115,000,00010(차량번호 10 생략)14,200,00011(차량번호

11 생략)18,000,00012(차량번호 12 생략)49,000,00013(차량번호 13

생략)58,000,00014(차량번호 14 생략)79,000,00015(차량번호 15 생략)108,000,000

2) 당시 차량번호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